▌ 예산정책연구 제9권 제3호 2020. 9. pp.31-61 https://doi.org/10.35525/nabo.2020.9.3.00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전병욱*

국문초록

법인주주는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통해 배당금수익의 일부가 과세에서 제외되지만 완전한 이중과세의 조정을 전제로 제도가 설계되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특히, 최근의 익금불산입 비율 인상을 통해 이중과세의 여지가 매우 축소된 지주회사에 비해 일반법인에 대한 익금불산입 비율은 아직 충분히 높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세제도의 개편을 통해 이중과세에 따른 이들 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개인주주에 대한 실질적 이중과세와 별개로 법인이 개인주주에게 직접 배당금을 지급하는 대신 법인주주를 우회해서 지급할 경우에는 불완전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통해 최종적인 개인주주 단계에서는 더욱 크게 세금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현행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통해 상당한 절세효과가 발생하지만 이중과세의 완전한 조정을 위해 필요한 법인단계의 비과세는 이루어지지 않고, 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해 평균적으로 5.9%의 법인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불완전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으로 인해 법인단계의 실효세율이 27.6%에서 32.1%로 증가함에 따라 모든 개인주주에 대한 법인단계 및 주주단계의 실효세율의 합계도 39.6%에서 43.4%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요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서 일반법인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율을 충분히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

□ 주제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이중과세, 절세효과, 실효세율, 우회지급

투고일: 2020. 4. 12. 수정일: 2020. 6. 2. 게재확정일: 2020. 6. 22.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bwjun@uos.ac.kr)

Ⅰ. 서 론

법인단계와 주주단계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가 당초 취지와 같이 법인 주주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개인주주의 경우에는 법인단계에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개별 주주의 소득세 한계세율 수준에 따라 최종적인 세금부담이 결정되는 귀속법인세(imputation) 제도를 통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완전한 이중과세의 조정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법인주주의 경우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통해 배당금수익의 일부가 과세에서 제외되지만 개인주주와 같은 완전한 이중과세의 조정을 전제로 동(同)제도가 설계되지 않은 기본적 한계점이 있는 것이다.

법인들 중에서도 일부 명목회사들의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및 동업기업과세특례 등을 통해 법인단계의 과세를 배제함으로써 완전한 이중과세의 조정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법인들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통해 불완전한 이중과세의 조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상 차별의 성격이 있는 것이다.

물론 개인주주의 경우에도 귀속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한 gross-up 비율로 10%의 법인세율을 반영한 11%만을[1] 적용하고, 이와 함께 분리과세 및 배당세액공제의 한도 적용으로 인해 실제로는 이중과세의 조정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적 특성을 고려하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불완전성을 어느 정도 합리화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러나, 동일한 법인들 중에서도 익금불산입 비율의 인상을 통해 이중과세의 여지가 매우 축소된 지주회사에 비해 일반법인에 대한 익금불산입 비율은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려는 별도의 입법취지 및 정책목표까지 고려하더라도 아직 충분히 높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동(同)비율의 인상 등과 같은 조세제도의 개편을 통해 이중과세에 따른 이들 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배당금수익에 대한 현행 조세제도의 적용 결과 발생하는 개인주주와 비교한 일반법인의 추가적 세금부담 수준에 대해 분석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이러한 추가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

1) 10%÷(1-10%)≒11%

Ⅱ.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분석

1. 제도적 개관 및 연혁

우리나라는 종전에는 무리한 기업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이중과세조정을 하지 않았으나 외환위기 이후 과세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2001년부터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을 적용했다.[2] 이중과세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인세 부과를 폐지하고 소득세 부과로 일원화하는 것이지만, 법인세를 계속해서 부과하는 이유는 개인주주 단계에서 과세할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개별 주주를 추적해서 과세해야 하는 과도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과세이연을 통한 사실상의 조세회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윤지현 2008).

우리나라는 2000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설립이 허용된 지주회사의 운영을 세제상으로 지원하고,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다(국세청 2000). 2001년 개정세법에서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율을 조정하고 자회사가 상장·코스닥 법인인 경우에도 비상장회사와 같이 지분비율 구간에 따라 익금불산입율을 달리 적용하도록(지주회사의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율 조정)[3]

---

2)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법인주주의 이중과세 조정과 별도로 개인주주의 이중과세 조정과 관련해서는 소득세법상 배당세액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배당세액공제제도는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를 주주단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해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인데, 개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귀속법인세를 더해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후에 동(同)귀속법인세를 세액공제해서 종합소득결정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조정방법은 법인세 과세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되 개인소득세 단계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주주단계 조정방법에 해당한다. 단, 우리나라의 배당세액공제제도는 배당지급법인별로 구분해서 귀속법인세율을 계산하는 대신 최저 법인세율(10%)을 바탕으로 귀속법인세를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의 11%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개인주주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이 불완전하게 기능하고 있다. 개인주주에 대한 그 밖의 예외적인 이중과세 조정제도는 지급배당금손금산입제도와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지급배당금손금산입제도는 유동화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등과 같이 법령에서 정한 특정한 투자나 이익분배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동(同)배당금 지급액을 손금산입해서 법인단계에서 세금부담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과세제도이고, 동업기업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의 이익을 동업자들에게 배분한 후에 동업자들이 배분받은 이익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담하도록 해서 동업기업 단계의 세금부담을 명시적으로 제거하는 과세제도이다.

3) 이와 함께 익금불산입금액에서 차감하는 차입금을 익금불산입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했고,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손자회사의 보유가 허용되는 점을 감안하였다.

하는 것과 함께 “기업과세제도의 선진화 및 지주회사와 일반법인간 과세 형평을 도모” 하기 위해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장치로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했다[4](국세청 2001).

2004년 개정세법에서는 일반지주회사도 금융지주회사와 유사한 조건을 갖춘 경우 손자회사 지분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금융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익금불산입을 적용했고(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보완), 벤처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법에서 벤처지주회사의 지분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에서도 이를 수용했다(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지주회사 자회사의 범위 조정)[5][6](국세청 2004). 2006년 개정세법에서는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자회사가 재출자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여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하되, 공정거래법에서도 계열회사 외의 타법인에 대한 재출자를 규제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자회사가 계열회사 외의 타법인에 1% 이상 재출자하는 경우에는 익금불산입을 허용했다(자회사의 재출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 보완)[7](국세청 2006).

2007년 개정세법에서는 일반법인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관투자자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율을 일반법인 수준으로 축소했고(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폐지), 기업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지주회사 전환 유도를 촉진하기 위해 지

---

4) 단, 대규모기업집단(재벌기업) 소속 계열사간 배당에 대하여는 상호·순환 출자 등의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이중과세조정에서 제외해서 지주회사 설립 또는 계열 분리를 통해 이중과세조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했고, 3개월 미만 단기 보유주식의 배당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을 배제함으로써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했으며, 뮤추얼펀드 등 paper company의 경우에는 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배당금이 소득공제되어 사실상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배당에 따른 이중과세의 조정대상에서 배제하였다.

5) 이 밖에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이나 연지급 수입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차입에서 발생한 이자가 아니라 매입활동과 관련된 이자이므로 이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한 유권해석(재경부 법인46012-80, 2003.5.9.)의 입장을 법령에 반영하였다(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제외되는 지급이자의 범위 명확화).

6) 2005년 개정세법에서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대상금액에서 차감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자회사 등에의 출자와 직접 관련된 차입금이자 뿐만 아니라 지주회사 등의 각사업연도에 지급한 이자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의 범위 명확화).

7) 이 밖에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도는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배당받는데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100% 법인세를 감면받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당해 배당이 비과세 대상인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적용을 배제했고(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보완), 관련 유권해석(국세청 서면2팀-147, 2005.1.20.)을 반영해서 주식보유기간 중 변동이 있는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해 주식수 및 출자비율을 계산하도록 명문화하였다(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주식수 계산방법 보완).

주회사의 익금불산입율을 2007년~200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했다(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율 조정).[8] 2008년 개정세법에서는 배당받은 법인, 배당금 지급법인 및 배당금 지급법인이 출자한 법인이 모두 계열회사인 경우에 한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적용을 배제하는 "계열회사"의 범위를 명확화했고,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기준이 하향조정된 점을 감안해서 자회사의 지분요건을 공정거래법상 요건과 일치하도록 완화했다(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9](국세청 2007).

2009년 개정세법에서는 법인간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본래 취지와 관계없는 규제를 폐지하기 위해 계열회사 재출자시 익금불산입 차감규정을 폐지했고,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동업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조정이 불필요한 점을 감안해서 동업기업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을 이중과세의 조정대상에서 제외했다[10](국세청 2009). 2012년 개정세법에서는 지주회사인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연결되지 않은 자회사(지분율 100% 미만)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법인 익금불산입율 대신 지주회사 익금불산입율을 적용하도록 했다[11][12](국세청 2012).

2019년 개정세법에서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각

---

8) 이 밖에 금융지주회사는 자금을 차입하여 자회사에 대여하는 자금지원업무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고유업무로 수행하는 점을 감안해서 금융지주회사가 차입금을 자회사에 대여하고 조달금리 이상의 이자를 받은 경우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에서 배제하였다(금융지주회사의 차입금이자 상당액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허용).

9) 이 밖에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 가능하므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동시에 적용되지 않도록 명확화했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협력기술지주회사에 대해 여타 지주회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율을 확대하였다.

10) 이 밖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 단체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중과세조정이 적용됨을 명확화하였다.

11) 이 밖에 지주회사가 물적분할로 다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산이 시가로 승계됨에 따라 신설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감소하여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주회사(A)가 적격 물적분할을 통해 다른 지주회사(B)를 설립하는 경우 신설지주회사(B)가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입금 이자 차감 계산식의 "세무상 주식장부가액"에 물적분할 전 지주회사(A)의 세무상 주식장부가액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12) 2014년 개정세법에서는 지원 실효성이 없는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을 일몰기한 경과로 인해 폐지하였다.

각 30%~40% 및 50%~80% 지분율 구간의 상장 및 비상장 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율을 차등화하고, 차입금을 통한 취득과 무관한 주식을 제외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을 합리화하기 위해 출자주식 적수 계산시 정부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을 제외했다(국세청 2019).

이상과 같은 연도별 개정을 반영해서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주요한 내용을 개관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은 영리내국법인이[13]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14] 대해 식(1)과 같이 계산하되, [표 1]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익금불산입 대상금액 − 차입금이자에 대한 익금불산입배제액 (≧0) (1)

[표 1]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제외 대상 수입배당금액

①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에서 발생한 수입배당금액[15]
② 배당금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법인세의 비과세 · 면세 · 감면에 해당하는 법인으로부터[16] 받는 수입배당금액[17]
③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

식(1)에서 “익금불산입 대상금액”은 식(2)와 같이 계산하되, 자회사의 유형 및 출자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비율은 [표 2]와 같다.

익금불산입 대상금액 = 수입배당금액 × 익금불산입비율 (2)

1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다.

14) 의제배당 포함

15) 조세회피 목적의 단기출자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16) 법인세법에 따른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유동화전문회사 · 투자회사 · 투자목적회사 등의 명목회사,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기업 및 감면율이 100%인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법인

17)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다.

[표 2] 익금불산입비율(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출자비율[18]	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비상장법인
30% 이하	30%	30%
30%초과 50%이하	50%	30%
50%초과 100%미만	50%	50%
100%	100%	100%

식(1)에서 "차입금이자에 대한 익금불산입배제액"은 식(3)과 같이 계산하되, 배당지급법인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한 후 합산한다.[19] 동(同)배제액을 규정한 것은 자금을 차입해서 주식에 투자할 경우 지급이자의 손금인정과 함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까지 적용하면 중복적 조세혜택으로 과세기반이 잠식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차입금이자에 대한 익금불산입배제액[20]
= 차입금이자[21] × 익금불산입비율 × (주식의[22] 장부가액 적수 ÷ 자산총액[23] 적수) (3)

다음으로,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지주회사가[24]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식(1)과 같이 계산하되,[25] [표 3]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회사는 지주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20%(40%)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 지주회사와 동일업종에 해당해야 한다.

18)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보유주식 등의 수를 계산할 때 동일 종목의 주식 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 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19) 따라서, 익금불산입비율과 주식의 장부가액 적수를 배당지급법인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한다.

20) 차입금이자에 대한 이중혜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2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에 의한 손금불산입액은 제외한다.

2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 등은 제외한다.

23)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이다.

24) 지주회사에는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도 포함된다.

25) 지주회사의 주된 수입원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의 대부분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이다.

[표 3]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제외 대상 수입배당금액

①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에서 발생한 수입배당금액
② 배당금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법인세의 비과세·면세·감면에 해당하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

식(1)에서 "익금불산입 대상금액" 및 "차입금이자에 대한 익금불산입배제액"은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과 동일하게 각각 식(2) 및 식(3)과 같이 계산하되, 자회사의 유형 및 출자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비율은 [표 4]와 같은데,[26] 일반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익금불산입비율은 지배구조가 투명한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이다. [표 4]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출자비율 요건 때문에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지 못하면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을 적용한다.

[표 4] 익금불산입비율(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출자비율[27]	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벤처기업	비상장법인
20% 미만	-	-	-
20% 이상 30% 이하	80%	80%	-
30% 초과 40% 미만	90%	80%	-
40%	90%	80%	80%
40% 초과 50% 이하	100%	80%	80%
50% 초과 80% 이하	100%	90%	90%
80% 초과	100%	100%	100%

26) 이와 함께 식(3)의 구체적 적용과 관련해서 "차입금이자" 및 "자산총액 적수"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차입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회사에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同)대여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이자와 동(同)대여금을 포함하지 않고, "주식의 장부가액 적수"에서 지주회사가 적격물적분할을 통해 설립하는 다른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전일의 분할지주회사의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한다(적격물적분할의 경우 신설지주회사가 분할지주회사로부터 승계한 자산 중 자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을 종전의 분할지주회사의 장부가액 대신 분할등기일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가>장부가액)의 경우에는 익금불산입배제액이 많아져서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이다).

27)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기 전에 부여한 신주인수권과 전환권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된 후 행사되어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는 경우 등 발행주식(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배당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일 종목의 주식 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 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2. 주요 국가의 법인 수입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제도

주주가 법인인 경우 주요 국가의 수입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제도와 관련해서 먼저, 영국은 수입배당금을 면제투자소득(Franked Investment Income)으로[28] 구분해서 세액공제의 방식으로 전액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독일은 물적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해 전액 익금불산입해서 역시 전액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입배당금공제(Dividend Received Deduction)의 방식으로 지분율이 20% 미만, 20% 이상 80% 미만 및 80% 이상인 경우에 각각 50%, 65% 및 100%의 과세소득을 공제한다. 일본은 원칙적으로 수입배당금의 50%를 익금불산입하되, 연결법인 및 관계법인주식(지분율이 25% 이상인 자회사의 주식) 등에서 발생한 수입배당금은 전액 익금불산입한다.

즉, 이들 비교대상 국가들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보다 큰 폭으로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별도로 주주가 개인인 경우 주요 국가의 수입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제도와 관련해서 먼저, 영국은 1999. 4. 6.부터 법인세 주주귀속법을 폐지하면서 배당세액공제율을 배당금의 1/9로 인하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낮게 인하하였다. 독일은 2008년까지 수입배당금의 40%를 과세소득에 산입했는데, 2009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2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수입배당금을 전액 과세소득에 산입하고 있다. 단,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파트너쉽의 경우에는 수입배당금의 60%를 과세소득에 산입하는 대신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별도의 이중과세 조정 없이 특정법인의 미배분이윤에 대해서는 유보이익세(accumulated earnings tax)와 인적지주회사세(personal holding company tax)를 추가로 부과해서 배당한 이익과의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있는데, 이와 무관하게 소규모법인은 주주 전원이 동의할 경우 법인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소득세만을 과세하는 조합과세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단, 개인주주의 적격배당(qualified dividends)에 대해 2003년부터 장기자본세율(long-term capital gain tax rates)을 적용해서 보통소득(ordinary income)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명시적인 이중과세의 조정제도로 구분하

28) 면제된 투자소득(Franked Investment Income)은 과세소득에 포함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납부한 법인세 해당액을 세액공제의 형태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전액 익금불산입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

기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유리한 과세상 취급이기 때문에 특정 개인주주에 대한 넓은 의미의 수입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제도로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일본은 일반적인 배당세액공제제도와 함께 3명 이하의 주주와 그들의 동족관계에 있는 개인 및 법인이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인 동족회사의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추가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Ⅲ.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통한 주주단계의 초과부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이중과세 조정 필요성의 이론적 근거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통한 이중과세의 조정은 근본적으로 법인의 본질에 대한 이론에 따라 그 필요성이 뒷받침되는 것인데, 법인의 본질론은 법인의제설과 법인실제설로 구분된다.

법인의제설은 원래 자연인만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개인 의사절대의 법리를 전제로 법인은 순전히 의제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인정되는 주체, 즉 "의제된 자연인"에 불과한 가상적 존재로 보는 것이다(지원림 2012). 법인의제설에 의하면 법인의 본질은 주주의 집합체이므로 법인의 소득은 개별 주주에게 귀속되고, 법인세는 개인단계에서 납부해야 할 주주의 소득세를 법인단계에서 선납한 것이며, 법인은 도관에 불과하므로 모든 소득은 개인에게 귀속시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김진수 2004).

이에 반해 법인실제설은 법인이 법적 거래에 보다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의제물이 아니라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실체로[29] 실재하고 있는 것을 법이 승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법인실제설에 의하면 주주와는 별개의 독립된 존재인 이상 법인의 소득은 주주와는 관계없는 법인 자체의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독자적인 담세력을 인정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법인세를 과세한 후의 소득을 배당하는 것은 법인과 별개의 인격체인 주주에게 자금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다.

법인의 본질에 대한 대립적 이론들과 관련해서 민법에서 법인 대표에 대하여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점(민법 제59조 제2항), 기관 개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점(동법 제35조 제1항) 및 법인의 목적에 의한 능력의 제한을 인정하는 점(동법 제34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법인은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한 법기술이라는 법인의제설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지원림 2012). 이러한 법인의제설에 의하면 법인의 세후

29) 사회적 실체가 무엇인지와 관련해서는 권리주체임에 적합한 법률적 조직을 가지는 조직체라는 유기체설과 법인격을 부여할만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사회적 작용을 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가치설이 있다(지원림 2012).

소득을 원천으로 하는 배당금수익은 주주단계의 개인별 과세로 최종적인 세금부담이 결정될 수 있도록 이중과세를[30]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개인주주가 배당금을 수령할 때까지의 지급단계와 무관하게 조세부담의 공평성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2. 배당금 수익에 대한 주주단계의 초과부담의 문제점

전술한 바와 같이 배당금수익에 대하여 주주단계의 개인별 과세로 최종적인 세금부담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해서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조세부담 수준의 비교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주주의 실질적인 이중과세 조정 정도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즉, 개인주주의 경우에도 11%의 단일 gross-up 비율 적용, 분리과세 및 배당세액공제의 한도 적용으로 인해 실제로는 불완전한 이중과세의 조정이 이루어지는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통해 이러한 이중과세 조정의 불완전성이 얼마나 가중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법인이 개인주주에게 직접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 분석하도록 한다.

개인의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의 과세방법은 금융소득을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및 조건부 종합과세로 구분한 후에 무조건 종합과세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의 합계액(종합과세 판정대상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들 합계 금융소득을 대상으로 종합과세하는데, 구체적으로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통해 소득세 기본세율(6%-42%)을 적용하고, 2,0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단, 이 경우에도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한 기본세율 적용(일반산출세액) 대신 전체 금융소득에 대해 분리과세세율(14%[31])을 적용할(비교산출세액) 경우의 산출세액이 더 클 경우에는 후자의 세액계산방식을 채택한다. 종합과세 판정대상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종합과세하되, 일반산출세액을 적용할 수 없는 대신

30) 강선준(2013)에 의하면 경제적 이중과세는 차입금 이자와 다르게 배당금 지급액에는 조세혜택이 없기 때문에 기업이 자기자본에 비해 부채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고, 기업이 이익의 배당 대신 사내유보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으며, 개인 투자자의 과중한 세금부담으로 인해 주식투자를 기피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31)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해서는 25%

비교산출세액만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세액계산방식을 채택한다.

일반적인 배당금수익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금융소득과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gross-up 및 배당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 조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4%의 분리과세로 과세문제를 종결하는 것이다.[32] 즉, 전체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이거나 gross-up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의 과세방식으로 인해 이중과세의 조정과는 무관하게 되는 것이다.

국세통계연보와 함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국세청의 비공개 과세자료를 분석한 이상엽과 윤성만(2016)을 이용해서 2014년을 기준으로 배당소득의 과세방식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2014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113,130명이지만, 이상엽과 윤성만(2016)은 국세청으로부터 동(同)대상자들을 12개의 금융소득구간별로 500명씩 무작위로 추출한 5,992명의 자료를 분석해서 전체 대상자의 5.3%(5,992명÷113,130명)를 분석했다. 이들 5,992명에 대한 1조 1,218억원의 배당소득 지급액 중 gross-up 대상인 배당금수익은 9,605억원으로 85.6%(9,605억원÷1조 1,218억원)를 차지했다. 동(同)비율을 이용해서 추정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배당소득 지급액은 7조 6,916억원으로 국세통계연보에 의한 2014년의 전체 배당소득 지급액인 14조 8,863억원의 51.7%(7조 6,916억원÷14조 8,863억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여기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7조 6,916억원의 배당소득 지급액은 이들에 대한 국세통계연보상 배당소득금액(8조 4,160억원)에서 귀속법인세의 추정금액인 7,244억원(8조 4,160억원×[(85.6%×11%)÷{85.6%×(1+11%)+14.4%}])을 차감해서 계산한 것이다(8조 4,160억원-7,244억원=7조 6,916억원). 결과적으로 2014년을 기준으로 전체 배당소득 지급액 중에서 이중과세 조정대상인 배당소득의 비율은 44.2%(51.7%×85.6%)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32)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과 같이 gross-up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이중과세의 조정을 하지 않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들 배당소득의 상대적 비중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별도로 고려하지는 않았다.

전체 배당소득 지급액 중 이중과세 조정대상인 배당소득의 비율
= 전체 배당소득 지급액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지급액의 비율×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배당소득 지급액 중 gross-up 대상인 배당금수익의 비율
= 51.7%×85.65% = 44.2%

이중과세의 조정대상이 아닌 나머지 55.8%(1-44.2%)의 배당소득은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는데,[33][34] 이들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단계 및 주주단계의 실효세율의 합계는 37.7%로 추정할 수 있다. 즉, 2014년의 전체 법인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의[35] 합계액은 128조 5,366억원이고,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35조 4,440억원으로 법인단계의 실효세율은 27.6%(35조 4,440억원÷128조 5,366억원)이다.[36][37] 따라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의 72.4%(1-27.6%)인 배당금 지급액 중 14%가 추가적으로 주주단계에서 과세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중과세 조정대상이 아닌 배당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은 37.7%(27.6%+72.4%×14%)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

33) 14%의 세율 대신 비과세나 무조건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저율과세 및 고율과세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들 배당소득의 비율은 매우 작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별도로 고려하지는 않았다. 전체 배당소득 중에서 비과세, 저율과세 및 고율과세 배당소득의 비율을 확인할 수 없지만, 이상엽과 윤성만(2016)에 의하면 2014년을 기준으로 5,992명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지급한 1조1,218억원의 배당소득 중에서 이들 배당소득은 40억원으로 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이중과세의 조정대상이 아닌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및 파생결합상품의 분배금 등)도 종합과세의 대상인 경우에는 14%의 세율 대신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본 연구는 이러한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부담 수준이 14%의 세율을 적용해서 분리과세할 경우와 유의적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수행하였다.

35)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을 상계한 금액이다.

36) 27.6%의 실효세율은 2014년의 법인세 최고세율인 22%보다 큰데, 이것은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차감전순이익(128조 5,366억원)에 비해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 순액(172조 2,138억원) 및 과세표준(221조 8,254억원)이 증가해서 각사업연도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실효세율인 20.6% 및 16.0%에 비해 크게 계산된 것이다.

37) 본 연구의 분석과 같이 동일연도의 배당가능한 세전이익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을 상계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으로 계산한 것은 전체 법인의 배당가능한 순세전이익의 합계에서 차지하는 세금부담의 비율을 "실효세율"의 개념으로 측정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러한 계산방식은 여러 사업연도에 걸친 세금부담의 계산에서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통한 기간별 통산을 허용하는 측면과도 동일한 취지이지만,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단일연도의 배당가능 세전이익을 기준으로 2014년의 법인단계의 실효세율을 계산할 경우에는 흑자기업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218조 6,775억원)을 적용해서 16.2%(35조 4,440억원÷218조 6,775억원)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이후의 분석결과도 달라지게 된다.

이중과세의 조정대상이 아닌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단계 및 주주단계의 실효세율의 합계
= 법인단계의 실효세율+(1-법인단계의 실효세율)×주주단계의 분리과세 세율
= 27.6%+72.4%×14% = 37.7%

이중과세의 조정대상인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주주단계에서 평균적으로 19.9%의 실효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들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단계와 주주단계의 실효세율의 합계는 42.0%로 추정할 수 있다. 여기서 19.9%의 주주단계 실효세율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배당소득 지급액(7조 6,916억원)에 대하여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할 경우의 종합소득결정세액 감소액에서 배당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7조 277억원-4조 7,993억원)-6,990억원=7조 277억원-5조 4,983억원=1조 5,294억원)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즉, 1조 5,294억원은 배당소득이 없을 경우 감소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부담액을 추정한 결과이다. 따라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의 72.4%인 배당금 지급액 중 19.9%가 추가적으로 주주단계에서 과세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중과세 조정대상인 배당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은 42.0%(27.6%+72.4%×19.9%)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38]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모든 개인주주에 대한 주주단계의 실효세율은 16.6%로 추정할 수 있고(44.2%×19.9%+55.8%×14%=16.6%), 모든 개인주주에 대한 법인단계 및 주주단계의 실효세율의 합계는 39.6%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44.2%×42.0%+55.8%×37.7%=39.6%).

이중과세의 조정대상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단계 및 주주단계의 실효세율의 합계
= 법인단계의 실효세율+(1-법인단계의 실효세율)×주주단계의 실효세율
= 27.6%+72.4%×19.9% = 42.0%

모든 개인주주에 대한 법인단계 및 주주단계의 실효세율의 합계
= 44.2%×42.0%+(1-44.2%)×37.7%
= 44.2%×42.0%+55.8%×37.7%
= 39.6%

38) 이러한 추정은 법인의 세후이익이 전액 주주에게 배당되는 것을(배당성향=1 인 것을) 암묵적으로 가정한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단일연도로 한정해서 분석할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본 연구에서 장기간에 걸친 주주단계의 전체적인 세금부담의 수준을 분석하는 측면을 고려하면 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4년을 기준으로 법인단계에서 과세하지 않을 경우의 배당소득 지급액은 20조 5,483억원(14조 8,863억원÷(1-27.6%))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동(同)금액을 이용해서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의 합계액은 8조 1,371억원(20조 5,483억원×39.6%)으로 계산할 수 있고, 배당세액공제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의 세금부담의 합계액은 8조 8,361억원(8조 1,371억원+6,990억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완전한 이중과세의 조정을 위해 법인단계에서 과세하지 않을 경우의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은 5조 1,204억원(20조 5,483억원×{51.7%×38%+(1-51.7%)×0.9%}=20조 5,483억원×24.9%)으로 계산할 수 있다. 즉,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할 경우의 종합소득과세표준(17조 6,342억원)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수(113,130명)으로 나누면 1억 5,588만원으로 2014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가장 높은 기준금액(1억 5,000만원)보다 크기 때문에 당시의 최고세율(38%)을 적용한 것이고, 동(同)대상자가 아닌 개인주주들에 대해서는 집계자료를 이용해서 계산한 배당소득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의 종합소득세 실효세율(10.9%)을 적용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개인주주에 대한 법인단계 및 주주단계의 이중과세로 인해 2014년을 기준으로 3조 167억원(8조 1,371억원-5조 1,204억원)의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발생했는데,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3조 7,157억원(8조 8,361억원-5조 1,204억원=3조 167억원+6,990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주주에 대한 이중과세의 결과 세금부담이 58.9%(3조 167억원÷5조 1,204억원) 증가하지만,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세금부담 증가율인 72.6%(3조 7,157억원÷5조 1,204억원)보다는 18.8%((72.6%-58.9%)÷72.6%=6,990억원÷3조 7,157억원)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표 5]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부담 수준의 분석을 위한 주요 집계자료(2014년 기준) 및 계산과정

항목		금액
배당소득 지급액(①)		14조 8,863억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표본에게 지급된 배당소득	gross-up 대상(②)	9,605억원
	gross-up 미대상	1,613억원
	소계(③)	1조 1,218억원
	gross-up 비율(④=②÷③)	85.6%
배당소득금액(⑤)		8조 4,160억원
배당가산액(⑥=⑤×[(④×11%)÷{④×(1+11%)+(1-④)}])		7,244억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배당소득 지급액(⑦=⑤-⑥)		7조 6,916억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배당소득 지급비율(⑧=⑦÷①)		51.7%
이중과세 조정대상 배당소득 비율(⑨=⑧×④)		44.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⑩)		128조 5,366억원
법인세 총부담세액(⑪)		35조 4,440억원
법인단계 실효세율(⑫=⑪÷⑩)		27.6%
이중과세 조정대상이 아닌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단계 및 주주단계의 실효세율 합계(⑬=⑫+{(1-⑫)×14%})		37.7%
종합소득금액(⑭)		26조 5,416억원
종합소득과세표준(⑮=⑭×97.3%[39])		25조 8,222억원
종합소득결정세액(⑯=⑮×27.2%[40])		7조 277억원
배당소득금액 제외시 종합소득금액(⑰=⑭-⑤)		18조 1,255억원
배당소득금액 제외시 종합소득과세표준(⑱=⑰×97.3%)		17조 6,342억원
배당세액공제(⑲)		6,990억원
배당소득금액 제외시 종합소득결정세액(⑳=⑱×27.2%+⑲)		5조 4,983억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주주단계의 실효세율(ⓐ=(⑯-⑳)÷⑦)		19.9%
이중과세 조정대상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단계 및 주주단계의 실효세율 합계(ⓑ=⑫+{(1-⑫)×ⓐ})		42.0%
전체 개인주주에 대한 주주단계의 실효세율(ⓒ=⑨×ⓐ+(1-⑨)×14%)		16.6%
전체 개인주주에 대한 법인단계 및 주주단계의 실효세율 합계(ⓓ=⑨×ⓑ+(1-⑨)×⑬)		39.6%
법인단계에서 과세하지 않을 경우의 배당소득 지급액(ⓔ=①÷(1-⑫))		20조 5,483억원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의 합계액(ⓕ=ⓔ×ⓓ)		8조 1,371억원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의 합계액(ⓖ=ⓕ+⑲)		8조 8,361억원
법인단계에서 과세하지 않을 경우의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부담(ⓗ=ⓔ×{⑧×38%+(1-⑧)×10.9%[41]})		5조 1,204억원
개인주주에 대한 이중과세의 결과 증가한 세금부담 비율((ⓕ-ⓗ)÷ⓗ)		58.9%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개인주주에 대한 이중과세의 결과 증가한 세금부담 비율((ⓖ-ⓗ)÷ⓗ)		72.6%
배당세액공제의 적용 결과 개인주주에 대한 초과 세금부담 비율의 감소율((ⓖ-ⓕ)÷ⓖ)		18.8%

자료: 「국세통계연보」 및 이상엽 · 윤성만(2016)

개인주주에 대한 법인단계 및 주주단계의 이중과세와 별개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통해 법인주주가 수령하는 배당금의 일부가 과세됨으로 인해 최종적인 개인주주 단계에서는 앞선 분석결과보다 더욱 크게 세금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은 일반법인과 지주회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 규모와 관련해서 관련 기사에[42] 의하면 2016년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익금불산입을 통한 세수감소액은 4,460억원이고, 100% 및 80%의 익금불산입 비율 적용 수입배당금에 대해 각각 4,120억원 및 340억원이다. 대신경제연구소(2018)에 의하면 2016년의 국내 지주회사들의 배당금 수익 합계는 1조 8,683억원이므로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에 적용되는 평균적인 익금불산입 비율은 98.1%({4,120억원×100%+(340억원÷80%)×80%}÷{4,120억원+(340억원÷80%)}=(4,120억원+340억원)÷4,545억원)로 계산할 수 있다. 단, 2019년 개정세법을 통해 [표 4]와 같이 종전의 80%의 익금불산입 비율이 적용된 일부 출자비율 구간에 90%의 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80%의 비율이 적용된 배당금수익의 62.5%에서[43] 90%의 비율이 대신 적용된다고 가정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재계산하면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에 적용되는 평균적인 익금불산입 비율은 98.7%({4,120억원×100%+(340억원÷80%)×(90%×62.5%+80%×37.5%)}÷4,545억원)로 계산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지주회사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4.0%({4,120억원+(340억원÷80%)×(90%×62.5%+80%×37.5%)}÷1조 8,683억원=4,487억원÷1조 8,683억원)로 계산할 수 있다.[44]

---

39)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표본의 종합소득금액(2조 2,448억원) 대비 종합소득과세표준(2조 1,839억원)의 비율이다.

40)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표본의 종합소득과세표준(2조 1,839억원) 대비 종합소득결정세액(5,944억원)의 비율이다.

41) 배당소득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의 전체 종합소득 과세표준(277조 6,434억원(근로소득 연말정산)+1조 1,594억원(사업소득 연말정산)+25조 8,222억원(종합소득신고)-7,244억원(배당소득금액)=303조 9,005억원) 대비 종합소득결정세액(25조 3,978억원(근로소득 연말정산)+595억원(사업소득 연말정산)+7조 277억원(종합소득신고)+6,990억원(배당세액공제)=33조 1,840억원)의 비율이다.

42) "지주사 배당 '익금불산입'으로 연간 4,460억원 법인세 감면," Daily NTN, 2018. 8. 30일자.

43) 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 20%-40%의 출자비율 구간 중에서 30%-40%에서 새롭게 90%의 비율이 적용되고(구간 범위를 기준으로 50%), 비상장법인인 경우에 40%-80%의 출자비율 구간 중에서 50%-80%에서 새롭게 90%의 비율이 적용되므로(구간범위를 기준으로 75%) 50%와 75%의 평균으로 추정한 것이다.

44)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규제(지주회사는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를 하여서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과 관련해서는 먼저 익금불산입의 대상인 영리내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을 2017년을 기준으로 16조 9,785억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 즉, 국세통계연보에 기재된 전체 법인의 손익계산서상 배당금수익 합계액(25조 3,567억원)에서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수령액(6조 5,099억원)[45] 및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1조 8,683억원)을[46] 차감하면 16조 9,785억원인 것이다. [표 2]와 같이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비율은 출자비율에 따라 4개의 구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외부감사대상기업을 대상으로 한 KISValue Database에 의하면 이들 기업의 2017년의 전체 배당금 지급액인 44조 2,460억원 중에서 법인주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액은 12조 3,531억원이고, 동(同)지급액을 출자비율의 구간에 따라 구분하면 각각 4조 7,884억원(100%), 1조 5,442억원(50%-100%), 2조 9,933억원(30%-50%) 및 3조 272억원(30% 이하)이고, 구성비율은 각각 38.8%, 12.5%, 24.2% 및 24.5%이다.[47] 이들 구성비율에 출자비율의 구간에 따른 익금불산입 비율(100%, 50%, 40%[48] 및 30%)을 적용하면 62.1%의 평균적인 익금불산입 비율을 계산할 수 있고(38.8%×100%+12.5%×50%+24.2%×40%+24.5%×30%=62.1%), 10조 5,363억원의 익금불산입 대상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16조 9,785억원×62.1%=10조 5,363억원). 여기에 추가적으로 국세통계연보의 집계자료를 바탕으로 2조 9,307억원의 익금불산입배제액을 계산할 수 있고, 7조 6,056억원(10조 5,363억원-2조 9,307억원)의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할 수 있다.[49] 7조 6,056억원에 2017년의 법인

는 아니된다(단,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를 고려해서 후술하는 일반법인과는 다르게 익금불산입배제액을 별도로 계산하지는 않았다.

45)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에서 확인한 2017년의 국제수지 중 "직접투자일반배당수입"(5,756.7백만달러)에 연평균 환율(1,130.84원)을 곱한 금액이다.

46) 2017년의 금액을 확인할 수 없어서 2016년의 금액을 적용하였다.

47) 법인주주에 대한 전체 및 출자비율 구간별 배당금 지급액은 KISValue Database에서 제공하는 1대주주부터 5대주주까지를 대상으로 집계한 것이다.

48) 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인 경우에 각각 50% 및 30%이지만, 상장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비율의 평균을 적용하였다.

49) 차입금이자(114조 7,445억원)×62.1%×(주식의 장부가액(469조 9,129억원)÷자산총액(1경 1,417조 2,837억원))=2조 9,307억원 (단, 전술한 바와 같이 차입금이자에 대한 익금불산입배제액은 배당지급법인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하여 합산해야 하지만, 이와 같은 세부적 계산에 필요한 주주별 자료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집계자료를 이용해서 추정한 것이다)

세 실효세율(17.2%[50])을 적용하면 일반법인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세금부담 감소액은 1조 3,070억원이다.

이상의 계산과 같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통해 상당한 절세효과(4,487억원+1조 3,070억원=1조 7,557억원)가 발생하지만 이중과세의 완전한 조정을 위해 필요한 법인단계의 비과세는 이루어지지 않고, 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해 평균적으로 5.9%의[51] 법인세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평균적 법인세 부담
= (1-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적용되는 평균적인 익금불산입 비율)×지주회사의 법인세 실효세율×영리내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 중 지주회사의 구성비율+(1-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에 적용되는 평균적인 익금불산입 비율)×일반법인의 법인세 실효세율×영리내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 중 일반법인의 구성비율
= (1-98.7%)×24.0%×9.9%+(1-62.1%)×17.2%×90.1%
= 5.9%

따라서, 앞선 개인주주의 세금부담 분석과 같이 법인이 개인주주에게 직접 배당금을 지급하는(이하 "직접지급") 경우와 비교해서 법인이 법인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을 다시 개인주주에게 지급하는(이하 "1차 우회지급") 경우에는 [표 5]의 분석에서 적용한 법인단계의 실효세율이 31.9%로 증가하는 것이다(27.6%+(1-27.6%)×5.9%=27.6%+72.4%×5.9%=31.9%). 이와 같이 직접지급 대신 법인주주를 우회해서 개인주주에게 최종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회단계가 증가함에 따라 법인단계의 실효세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이다. 예컨대, 2차 우회지급의 경우에는 법인단계의 실효세율이 35.9%(27.6%+72.4%×5.9%+72.4%×94.1%×5.9%)이고, n차 우회지급의 경우에는 (27.6%+72.4%×5.9%+72.4%×94.1%×5.9%+…+72.4%×94.1%$^{n-1}$×5.9%)인 것이다.[52]

이상의 배당금 지급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주주와 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주주에 대한 전체 배당금 지급액 중에서 개인주주에 대한 지급액 비율이 44.1%(14조

50) 법인세 총부담세액(51조 3,278억원)÷법인세 과세표준(298조 6,740억원)=17.2%

51) (1-98.7%)×24.0%×{1조 8,683억원÷(1조 8,683억원+16조 9,785억원)}+(1-62.1%)×17.2%×{16조 9,785억원÷(1조 8,683억원+16조 9,785억원)}=(1-98.7%)×24.0%×9.9%+(1-62.1%)×17.2%×90.1%=5.9%

52) 단, 본 연구의 분석에서 배당의 차수가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경과하는 기간을 반영한 화폐의 시간가치는 편의상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다.

8,863억원÷{14조 8,863억원+(1조 8,683억원+16조 9,785억원)})이고, 법인주주에 대한 지급액 비율이 55.9%(1-44.1%)이기[53] 때문에 이상의 우회단계별 법인단계의 실효세율 자료와 결합하면 불완전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으로 인해 최종적인 법인단계의 실효세율은 아래와 같이 32.1%로 계산되어서 불완전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의 27.6%에 비해 훨씬 커지고, 최종적인 개인주주의 세금부담의 합계액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begin{aligned}
&44.1\% \times 27.6\% + (55.9\% \times 44.1\%) \times (27.6\% + 72.4\% \times 5.9\%) \\
&+ (55.9\%^2 \times 44.1\%) \times (27.6\% + 72.4\% \times 5.9\% + 72.4\% \times 94.1\% \times 5.9\%) \\
&+ (55.9\%^3 \times 44.1\%) \times (27.6\% + 72.4\% \times 5.9\% + 72.4\% \times 94.1\% \times 5.9\% + 72.4\% \times \\
&94.1\%^2 \times 5.9\%) + \cdots \text{[54]} \qquad (4) \\
&= 32.1\%
\end{aligned}
$$

즉, 불완전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으로 인해 법인단계의 실효세율이 27.6%에서 32.1%로 증가함에 따라 이중과세 조정대상이 아닌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단계 및 주주

---

53) 비영리법인과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주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액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대적 지급액 비율은 배당금의 지급대상이 거주자인 개인주주 및 영리내국법인 주주로 구성된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계산한 것이다.

54) 중간 계산단계는 아래와 같이 전개할 수 있다.

$$
\begin{aligned}
&44.1\% \times 27.6\% + (55.9\% \times 44.1\%) \times (27.6\% + 72.4\% \times 5.9\%) + \\
&(55.9\%^2 \times 44.1\%) \times (27.6\% + 72.4\% \times 5.9\% + 72.4\% \times 94.1\% \times 5.9\%) + \\
&(55.9\%^3 \times 44.1\%) \times (27.6\% + 72.4\% \times 5.9\% + 72.4\% \times 94.1\% \times 5.9\% + 72.4\% \times 94.1\%^2 \times 5.9\%) + \cdots \\
&= 44.1\% \times 27.6\% + (55.9\% \times 44.1\%) \times \{27.6\% + (72.4\% \times 5.9\%)\} + \\
&(55.9\%^2 \times 44.1\%) \times \{27.6\% + (72.4\% \times 5.9\%) \times (1 + 94.1\%)\} + \\
&(55.9\%^3 \times 44.1\%) \times \{27.6\% + (72.4\% \times 5.9\%) \times (1 + 94.1\% + 94.1\%^2)\} + \cdots \\
&= 27.6\% \times (44.1\% + 55.9\% \times 44.1\% + 55.9\%^2 \times 44.1\% + \cdots) \\
&+ (55.9\% \times 44.1\%) \times (72.4\% \times 5.9\%) \times \{1 + 55.9\% \times (1 + 94.1\%) + 55.9\%^2 \times (1 + 94.1\% + 94.1\%^2) + \cdots\} \\
&= 27.6\% \times (44.1\% + 55.9\% \times 44.1\% + 55.9\%^2 \times 44.1\% + \cdots) + \\
&(55.9\% \times 44.1\%) \times (72.4\% \times 5.9\%) \times \{1 \times (1 + 55.9\% + 55.9\%^2 + \cdots) + 94.1\% \times (55.9\% + 55.9\%^2 \\
&+ \cdots) + 94.1\%^2 \times (55.9\%^2 + 55.9\%^3 + \cdots) + \cdots\} \\
&= 27.6\% \times \{44.1\% \div (1 - 55.9\%)\} + \\
&\{(55.9\% \times 44.1\%) \times (72.4\% \times 5.9\%)\} \times \{(1 \div (1 - 55.9\%)) + (94.1\% \times 55.9\%) \div (1 - 55.9\%) + (94.1\% \\
&\times 55.9\%)^2 \div (1 - 55.9\%) + \cdots\} \\
&= 27.6\% \times \{44.1\% \div (1 - 55.9\%)\} \\
&+ \{(55.9\% \times 44.1\%) \times (72.4\% \times 5.9\%)\} \times \{(1 + (94.1\% \times 55.9\%) + (94.1\% \times 55.9\%)^2 + \cdots\} \div (1 - 55.9\%) \\
&= 27.6\% + \{(55.9\% \times 44.1\%) \times (72.4\% \times 5.9\%)\} \times \{1 \div (94.1\% \times 55.9\%)\} \div (1 - 55.9\%) \\
&= 32.1\%
\end{aligned}
$$

단계의 실효세율 합계는 37.7%(27.6%+(1-27.6%)×14%)에서 41.6%(32.1%+(1-32.1%)×14%)로 증가하고, 이중과세 조정대상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단계 및 주주단계의 실효세율 합계는 42.0%(27.6%+(1-27.6%)×19.9%)에서 45.6%(32.1%+(1-32.1%)×19.9%)로 증가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개인주주에 대한 법인단계 및 주주단계의 실효세율의 합계도 39.6%(44.2%×42.0%+55.8%×37.7%)에서 43.4%(44.2%×45.6%+55.8%×41.6%)로 증가하고, 2014년을 기준으로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최종적인 세금부담의 합계액도 8조 1,371억원(20조 5,483억원×39.6%)에서 8조 9,159억원(20조 5,483억원×43.4%)로 7,789억원 증가하는 것이다.[55)]

55) 이상의 분석은 전술한 바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법인의 세후이익이 전액 주주에게 배당되는 것을(배당성향=1 인 것을) 가정한 것인데, 이러한 가정을 완화해서 당해연도 및 비교적 단기간인 배당 지급연도부터 5년간의 누적 배당성향을 바탕으로 분석결과를 재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아래의 분석을 위한 당해연도의 배당성향은 국회예산정책처(2019)를 바탕으로 29.4%를 적용했고, 5년간의 누적 배당성향은 동(同)비율을 바탕으로 82.5%(29.4%+{(1-29.4%)×29.4%}+…+{(1-29.4%)^4×29.4%})를 적용하였다.

구분	배당성향의 가정		
	29.4%(당해연도)	82.5%(누적 5년)	1(장기)*
이중과세의 조정대상이 아닌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단계 및 주주단계의 실효세율의 합계	27.6%+72.4%×29.4%×14% = 30.5%	27.6%+72.4%×82.5%×14% = 35.9%	27.6%+72.4%×14% = 37.7%
이중과세의 조정대상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단계 및 주주단계의 실효세율의 합계	27.6%+72.4%×29.4%×19.9% = 31.8%	27.6%+72.4%×82.5%×19.9% = 39.4%	27.6%+72.4%×19.9% = 42.0%
모든 개인주주에 대한 법인단계 및 주주단계의 실효세율의 합계	44.2%×31.8%+55.8%×30.5% = 31.1%	44.2%×39.4%+55.8%×35.9% = 37.5%	44.2%×42.0%+55.8%×37.7% = 39.6%
직접지급부터 n차 우회지급까지 전체적으로 반영하는 경우 모든 개인주주에 대한 법인단계 및 주주단계의 실효세율의 합계	44.2%×{32.1%+(1-32.1%)×29.4%×19.9%}+55.8%×{32.1%+(1-32.1%)×29.4%×14%} = 35.4%	44.2%×{32.1%+(1-32.1%)×82.5%×19.9%}+55.8%×{32.1%+(1-32.1%)×82.5%×14%} = 41.4%	44.2%×{32.1%+(1-32.1%)×19.9%}+55.8%×{32.1%+ (1-32.1%)×14%} = 43.4%

* 본문의 분석

직접지급의 경우 법인단계의 실효세율 = 27.6%
직접지급부터 n차 우회지급까지 전체적으로 반영하는 경우 법인단계의 실효세율 = 32.1%
직접지급의 경우 모든 개인주주에 대한 법인단계 및 주주단계의 실효세율의 합계
= 44.2%×{27.6%+(1-27.6%)×19.9%}+55.8%×{27.6%+(1-27.6%)×14%}
= 44.2%×42.0%+55.8%×37.7%
= 39.6%
직접지급부터 n차 우회지급까지 전체적으로 반영하는 경우 모든 개인주주에 대한 법인단계 및 주주단계의 실효세율의 합계
= 44.2%×{32.1%+(1-32.1%)×19.9%}+55.8%×{32.1%+(1-32.1%)×14%}
= 44.2%×45.6%+55.8%×41.6%
= 43.4%

이와 같이 불완전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으로 인해 법인단계의 실효세율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개인주주의 전체적인 세금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배당금의 직접지급에 비해 우회지급의 경우에 5.9%의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식(4)는 이와 같은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을 고려해서 법인단계의 실효세율을 재계산한 것인데, 다른 모수(parameter)가 일정할 경우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통한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비율(x, 이상의 분석에서는 5.9%)을 이용해서

$$\begin{aligned} &27.6\%+\{(55.9\%\times 44.1\%)\times(72.4\%\times x)\}\times\{1\div((1-x)\times 55.9\%)\}\div(1-55.9\%) \\ &= 27.6\%+72.4\%\times\{x\div(1-x)\} \qquad (5) \end{aligned}$$

와 같이 단순하게 기술할 수 있는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통해 이중과세의 완전한 조정을 위해 필요한 법인단계의 비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즉, x=0 인 경우에는) 식(5)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27.6%로 계산되어서 개인주주에게 직접 배당금을 지급하는(직접지급) 경우와 세금부담의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3. 배당금수익에 대한 주주단계의 초과부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개선방안

앞선 절의 분석과 같이 법인이 개인주주에게 직접 배당금을 지급하는(직접지급) 대신 법인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을 다시 개인주주에게 지급하는(우회지급) 경우에 최종적인 개인주주의 세금부담의 합계액이 증가하는 것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통해 불완전한 이중과세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법인단계의 실효세율이 식(5)와 같이 증가

하기 때문이다(27.6%→27.6%+72.4%×{x÷(1-x)}). 따라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익금불산입비율을 인상해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통한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비율(x)을 5.9%에서 감소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식(5)에 적용한 5.9%의 추가적 법인세 부담비율(x)은 전술한 바와 같이 (1-98.7%)×24.0%×9.9%+(1-62.1%)×17.2%×90.1%=5.9% 로 계산한 것인데, 여기서 지주회사 및 일반법인 수입배당금에 적용되는 실효세율(24.0% 및 17.2%)과 개별 수입배당금 규모의 상대적 비중(9.9% 및 90.1%)이 외생적으로 주어진 조건이기 때문에 개별 수입배당금에 적용되는 평균적인 익금불산입 비율을 증가시켜서 추가적 법인세 부담비율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에 대한 평균적인 익금불산입 비율(98.1%)은 추가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62.1%의 평균적인 익금불산입 비율을 증가시키는 조세제도의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62.1%의 평균적인 익금불산입 비율은 전술한 내용을 정리해서 [표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이하에서는 전술한 주요 국가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중에서 미국과 일본의 방식에 따른 개편방안들을 시행할 경우의 효과에 대해 분석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앞선 절의 분석과 다르게 국세통계연보에 이용가능한 자료가 있는 가장 최근 연도인 2017년을 기준으로 분석하기 위해 2014년을 기준으로 한 분석에서 적용한 [표 5]의 자료들 중에서 배당소득 지급액(①, 22조 1,080억원) 및 법인단계 실효세율(⑫, 23.7%[56])을 2017년도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한다. 또한, 앞선 절의 분석에 사용한 그 밖의 비율자료 등은 2017년의 자료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한다.

먼저,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일반법인 수입배당금의 출자비율 구간별 구성비율(24.5%, 24.2%, 12.5% 및 38.8%)이 동일한 상태에서 미국의 방식으로 익금불산입 제도를 개편할 경우에는[57] [표 6]과 같이 평균적인 익금불산입 비율이 62.1%에서 77.9%로 증

56) 2017년의 법인세 총부담세액(51조 3,278억원)÷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216조 7,187억원))=23.7%

57) 단, 출자비율의 구간이 우리나라와 다르고, 출자비율 구간별 구성비율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비율을 구간범위를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값으로 미국의 구간별 익금불산입 비율을 계산하였다. 예컨대, 50%초과 100%미만 구간의 경우에는 미국의 20% 이상 80% 미만 및 80% 이상 구간에 대한 익금불산입비율이 각각 65% 및 100%이기 때문에 65%×{(80%-50%)÷(100%-50%)}+100%×{(100%-80%)÷(100%-50%)}=79%로 계산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동일한 계산방식을 적용하였다.

가하면서 그 결과 2017년을 기준으로 우회지급을 통한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비율이 5.9%에서 3.5%로 낮아지게 된다. 3.5%로 낮아진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비율의 결과 법인단계의 실효세율은 28.5%에서 26.4%로 2.1%p 낮아지고, 법인단계와 주주단계의 실효세율의 합계는 40.3%에서 38.6%로 1.7%p 낮아지며, 최종적으로 개인주주의 최종적인 세금부담이 11조 6,887억원에서[58] 11조 1,919억원으로 4,968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일반법인 수입배당금의 출자비율 구간별 구성비율이 동일한 상태에서 일본의 방식으로 익금불산입 제도를 개편할 경우에는 [표 6]과 같이 평균적인 익금불산입 비율이 62.1%에서 89.8%로 증가하면서 그 결과 2017년을 기준으로 우회지급을 통한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비율이 5.9%에서 1.6%로 낮아지게 된다. 1.6%로 낮아진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비율의 결과 법인단계의 실효세율은 28.5%에서 24.9%로 3.5%p 낮아지고, 법인단계와 주주단계의 실효세율의 합계는 40.3%에서 37.4%로 3.0%p 낮아지며, 최종적으로 개인주주의 최종적인 세금부담이 11조 6,887억원에서 10조 8,336억원으로 8,551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표 6]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비율의 개편방안에 따른 효과 분석(2014년 기준)

출자비율(구성비율)		현행 익금불산입율	개편방안1-미국	개편방안2-일본
30% 이하	24.5%	30%	55%	58.3%
30%초과 50%이하	24.2%	40%*	65%	100%
50%초과 100%미만	12.5%	50%	79%	100%
100%	38.8%	100%	100%	100%
평균적 익금불산입 비율		62.1%	77.9%	89.8%
추가적 법인세 부담비율(x)		5.9%	3.5%	1.6%
법인단계 실효세율		28.5%	26.4%	24.9%
법인 · 주주단계 실효세율 합계		40.3%	38.6%	37.4%
개인주주의 최종적 세금부담		11조 6,887억원	11조 1,919억원	10조 8,336억원

* 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50%) 및 비상장법인인 경우(30%)의 평균

이상의 분석결과와 같이 미국과 일본의 방식으로 익금불산입 제도를 개편할 경우에는[59] [표 5]에서 제시한 완전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통해 법인주주의 추가적 세금

58) {22조 1,080억원÷(1-23.7%)}×40.3%=28조 9,691억원×40.3%=11조 6,887억원

59)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과 일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율과 관련해서는 보다 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주주가 부담하는 세금부담의 합계(10조 5,317억원[60])에 비해서는 계속해서 더 많은 세금부담이 발생하지만 추가적인 세금부담의 규모가 1조 1,570억원(11조 6,887억원-10조 5,317억원)에서 각각 6,603억원 및 3,020억원으로 42.9% 및 73.9%씩 감소해서 불완전한 익금불산입을 통한 추가적인 이중과세의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법인의 배당금 지급 및 구체적 과세방법의 현황과 관련해서 이용가능한 매우 제한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즉, 본 연구의 분석을 전개하기 위한 개인주주의 금융소득 구성 등과 같은 핵심적 가정들에 대해 국세청이 제공한 2014년 과세연도에 대한 비공개 과세자료를 분석한 이상엽 · 윤성만(2016)을 바탕으로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들을 다른 과세연도에도 동일하게 적용가능한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하더라도 배당금수익에 대한 기본적인 이중과세의 방식으로 인해 최종적인 개인주주의 단계에서 상당한 초과 세금부담이 발생하는 것과 함께 법인이 개인주주에게 직접 배당금을 지급하는 대신 법인주주를 우회해서 지급할 경우에는 불완전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세금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61] 따라서, 후자의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표 6]의 예시와 같이 주요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서 일반법인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율을 충분히 인상할 필요성이 있고, 실제 인상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기에 이러한 개편방안을 조세제도의 개정에서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극적인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조세제도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과 함께 우리나라와 다른 정책적 환경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에는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수령액에 대해 우리나라에 비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범위가 넓어서 국제적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대부분 해결하고 있는데, 이와 대응하기 위해 국내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수령액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 조세제도 개편의 토대가 된 샤프(Sharp) 권고안에 따라 이중과세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높은 비율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제도화한 것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60) 28조 9,691억원×36.4% = 28조 9,691억원×{44.2%×38.9%+(1-44.2%)×34.4%} = 28조 9,691억원×[44.2%×{23.7%+(1-23.7%)×19.9%}+(1-44.2%)×{23.7%+(1-23.7%)× 14%}] = 10조 5,317억원

61) 또한, 이러한 분석결과는 [표 5]에서 정리한 비율자료들을 일정한 범위에서 변경하더라도 배당금수익에 대한 현행 과세제도에서 비교적 강건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Ⅳ. 결 론

법인세법상 법인주주의 경우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통해 배당금수익의 일부가 과세에서 제외되지만 개인주주와 같은 완전한 이중과세의 조정을 전제로 동(同)제도가 설계되지 않은 기본적 한계점이 있다. 특히, 최근의 익금불산입 비율 인상을 통해 이중과세의 여지가 매우 축소된 지주회사에 비해 일반법인에 대한 익금불산입 비율은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려는 별도의 입법취지 및 정책목표까지 고려하더라도 아직 충분히 높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동(同)비율의 인상 등과 같은 조세제도의 개편을 통해 이중과세에 따른 이들 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현행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통해 추가적 세금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세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통한 법인주주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의 필요성은 법인의 본질에 대한 일반적 학설인 법인의제설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비교대상 국가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비해 보다 큰 폭으로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행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최종적인 개인주주 단계에서의 이중과세 조정의 불완전성이 동(同)제도를 통해 얼마나 가중되는지에 대해 집계자료 등을 이용해서 분석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전체 배당소득 지급액 중에서 이중과세 조정대상인 배당소득의 비율은 44.2%이고, 법인단계의 실효세율은 27.6%이고, 모든 개인주주에 대한 주주단계의 실효세율은 16.6%이며, 법인단계 및 주주단계의 실효세율의 합계액은 39.6%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개인주주에 대한 이중과세의 결과 세금부담이 58.9% 증가하지만,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세금부담 증가율인 72.6%보다는 18.8%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주주에 대한 법인단계 및 주주단계의 이중과세와 별개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통해 법인주주가 수령하는 배당금의 일부가 과세됨으로 인해 최종적인 개인주주 단계에서는 더욱 크게 세금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행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통해 상당한 절세효과(2014년 기준 1조 7,557억원)가 발생하지만 이중과세의 완전한 조정을 위해 필요한 법인단계의 비과세는 이루어지지 않고, 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해 평균적으로 5.9%의 법인세 부담이 발생하고, 그 결과 최종적인 법인단계의 실

효세율은 32.1%로 증가해서 불완전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의 27.6%에 비해 훨씬 커지고, 최종적인 개인주주의 세금부담의 합계액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불완전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으로 인해 법인단계의 실효세율이 27.6%에서 32.1%로 증가함에 따라 모든 개인주주에 대한 법인단계 및 주주단계의 실효세율의 합계도 39.6%에서 43.4%로 증가하고, 2014년을 기준으로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최종적인 세금부담의 합계액도 8조 1,371억원에서 8조 9,159억원으로 7,789억원 증가하는 것이다.

분석결과와 같이 법인이 개인주주에게 직접 배당금을 지급하는(직접지급) 대신 법인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을 다시 개인주주에게 지급하는(우회지급) 경우에 최종적인 개인주주의 세금부담의 합계액이 증가하는 것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통해 불완전한 이중과세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법인단계의 실효세율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익금불산입비율을 인상해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통한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비율을 5.9%에서 감소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에 대한 평균적인 익금불산입 비율은 추가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62.1%의 평균적인 익금불산입 비율을 증가시키는 조세제도의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세통계연보에 이용가능한 자료가 있는 가장 최근 연도인 2017년을 기준으로 분석하면서 미국의 방식으로 익금불산입 제도를 개편할 경우에는 평균적인 익금불산입 비율이 62.1%에서 77.9%로 증가하면서 그 결과 우회지급을 통한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비율이 5.9%에서 3.5%로 낮아지게 된다. 3.5%로 낮아진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비율의 결과 법인단계의 실효세율은 28.5%에서 26.4%로 2.1%p 낮아지고, 법인단계와 주주단계의 실효세율의 합계는 40.3%에서 38.6%로 1.7%p 낮아지며, 최종적으로 개인주주의 최종적인 세금부담이 11조 6,887억원에서 11조 1,919억원으로 4,986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일본의 방식으로 익금불산입 제도를 개편할 경우에는 평균적인 익금불산입 비율이 62.1%에서 89.8%로 증가하면서 그 결과 우회지급을 통한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비율이 5.9%에서 1.6%로 낮아지게 된다. 1.6%로 낮아진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비율의 결과 법인단계의 실효세율은 28.5%에서 24.9%로 3.5%p 낮아지고, 법인단계와 주주단계의 실효세율의 합계는 40.3%에서 37.4%로 3.0%p 낮아지며, 최종적으로 개인주주

의 최종적인 세금부담이 11조 6,887억원에서 10조 8,336억원으로 8,551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방식으로 익금불산입 제도를 개편할 경우에는 완전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통해 법인주주의 추가적 세금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주주가 부담하는 세금부담의 합계(10조 5,317억원)에 비해서는 계속해서 더 많은 세금부담이 발생하지만 추가적인 세금부담의 규모가 1조 1,570억원(11조 6,887억원-10조 5,317억원)에서 각각 6,603억원 및 3,020억원으로 42.9% 및 73.9%씩 감소해서 불완전한 익금불산입을 통한 추가적인 이중과세의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배당금수익에 대한 기본적인 이중과세의 방식으로 인해 최종적인 개인주주의 단계에서 상당한 초과 세금부담이 발생하는 것과 함께 법인이 개인주주에게 직접 배당금을 지급하는 대신 법인주주를 우회해서 지급할 경우에는 불완전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세금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후자의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요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서 일반법인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율을 충분히 인상할 필요성이 있고, 실제 인상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편방안을 조세제도의 개정에서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조세법 분야의 가장 중요한 연구대상 중 하나인 법인단계와 주주단계의 이중과세의 문제에 대해 선행연구의 일반적인 개념적 분석방법과 구분해서 현실적 요인들을 반영한 경제적 분석을 통해 최종적인 초과 세금부담의 수준과 함께 다양한 해외사례를 참고해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율을 인상할 경우의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이를 통해 과세당국이 장래의 조세제도 개편에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 측면에서 공헌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단, 이용가능한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법인단계별 주주구성 및 개인주주의 금융소득 구성 등과 관련한 세부적 자료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비교적 단순한 가정을 바탕으로 경제적 분석을 수행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은 보다 충분한 자료수집이 가능한 장래의 후속연구를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선준 · 이철행, “법인의 수입 배당금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법인세법 제18조의 3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중심으로,”「기업소송연구」 제11호, 2013, 177~215쪽.

국세청, 「개정세법해설」, 국세청, 각 연도.

_____,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각 연도.

국회예산정책처,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③ 법인세」, 국회예산정책처, 2017.

_____, 「NABO 경제동향 & 이슈」 2019년 7월호 통권 제81호, 국회예산정책처, 2019.

김진수, 「배당소득과세제도의 개편방안 – 배당소득의 이중과세조정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4.

대신경제연구소, “지주회사의 손익구조를 통해 본 주주가치 개선 방안,” 2018. 5. 14.

윤지현, “동업기업 세제 도입에 따른 기업형태별 적절한 과세방안에 관한 연구 : 기업형태 선택에 관한 조세중립성의 측면을 중심으로,”「조세법연구」 제14권 제2호, 2008, 7~67쪽.

이상엽 · 윤성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의 영향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지원림, 「민법강의(제9판)」, 홍문사, 201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bok.or.kr〉, 2014년~2017년. (검색일: 2020.4.12.)

NICE 평가정보(주), 〈www.kisvalue.com〉, 2014년~2017년. (검색일: 2020.4.12.)

How to Rationally Revise Tax Laws Regarding Dividend Received Deduction

Jun, Byung Wook*

Abstract

Despite the enforcement of dividend received deduction("DRD" hereafter), dual taxation problem on corporate shareholders can't be conceptually solved perfectly. Such imperfect feature comes from the fact that the ratio of DRD is not as high as need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besides de-facto dual taxation on individual shareholders, imperfect DRD works to aggravates economic burden of those shareholders in the final stage. Although DRD gives rise to considerable tax saving effect, aforementioned imperfect feature triggers 5.9% of tax burden in the corporate stage on average, which further increases the effective tax rate in the corporate stage from 27.6% to 32.1%, and increases the overall effective tax rate in the final stage from 39.6% to 43.4%. Increased tax burden of individual shareholders in the final stage caused by circuitous payment of dividends to individual shareholders, not direct payment, is because of the DRD's effect on imperfect clearance of dual taxation and increased effective tax rate in the corporate stage. Thus, the DRD ratio needs to be raised to lower the 5.9% of additional tax burden in the corporate stage.

Summing up, the insufficient level of DRD on circuitous payment of dividends, as well as the imperfect clearance of dual taxation in the final stage, substantial tax burden accrues supplementarily. Thus, such disadvantageous additional tax burden should be relieved through the downward adjustment of existing DRD ratio.

□ Keywords: Dividend Received Deduction, Dual Taxation, Tax Saving Effects, Effective Tax Rate, Circuitous Payment

---

*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University of Seoul